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김희정 · 장동혁 · 서지영
김대식 · 김도읍 · 최수진
임이자 · 이현승 · 신성범
정동만 · 박상웅 · 곽규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·문화·복지·체육·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·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학교시설 중에는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,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인 법령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는 실정임.

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·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

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본문 중 “학교 또는”을 “학교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·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포함한다) 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2. (생 략) 3.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<u>학교 또는 폐교</u> (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·문화·복지·체육·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학교</u>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·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포함한다) 또는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